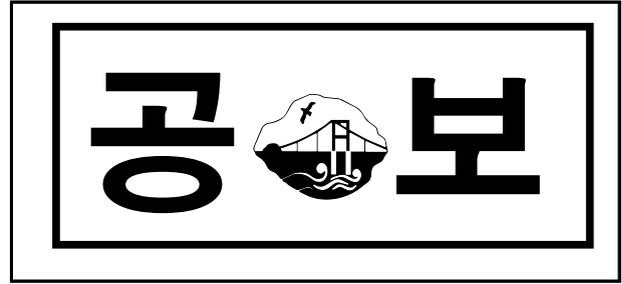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89호 2021. 4. 20.(화)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94호 남해군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45호	도로명주소 고시	8
남해군 고시 제2021-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지형도면고시	11
	접도구역 폐지	12
	군도21호선(노량~덕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3
남해군 고시 제2021-48호	2021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	14
남해군 고시 제2021-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25
남해군 고시 제2021-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26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481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27
남해군 공고 제2021-497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30
남해군 공고 제2021-520호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31
남해군 공고 제2021-521호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33
남해군 공고 제2021-523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7
남해군 공고 제2021-525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48
남해군 공고 제2021-526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50
남해군 공고 제2021-544호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4
남해군 공고 제2021-545호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4
남해군 공고 제2021-547호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8
남해군 공고 제2021-559호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78
남해군 공고 제2021-561호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82
남해군 공고 제2021-57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90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94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4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임용시험·승진”을 “임용·시험·승진”으로, “규칙”을 “규칙이 정하는 바”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 시험의 세부 일정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시험”을 삽입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응시하려는”을 “응시하고자 하는”으로, “1매를 제출”을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시험실기”을 “시험실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의 제1항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4조”를

“영 제64조의 규정” 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3호 중 “7일” 을 “3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9조” 를 “제59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 앞에 “제2장 시험” 을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시하려는” 을 “응시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 제14조제6항” 을 “제1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 를 “인하여 제8조의 규정”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을 “제2항의 규정”으로, “연령·학력 또는” 을 “연령·학력,”으로, “정하는” 을 “정하여”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은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별지 제11 및 12호” 를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로 하고, 제2항 단서 및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의3제1항을 삭제하고, 제13조의3제2항 본문의 후단 중 “둘”을 “2개”로,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같은 항 단서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하며 제13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제1항 중 “에 따른”을 “의 규정에 따른”으로, “이조에”를 “이 조에서”로, “요건을 [별표 5]”를 “요건은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를 “제6조의 규정”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제6조”를 “제6조의 규정”으로, “시험등의”을 “시험등”으로 하며, “담당직무”를 “당해 직무”로 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도의규정”을 “지도직규정”으로 하고, “하려는”을 “하고자 하는”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을 “학교장이 추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자이어야 하며”를 “사람이어야 하며”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제6조”를 “제6조의 규정”으로, 같은 조 제9항 후단 중 “대해서도”를 “대하여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같다”를 “같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지방전문경력관규정·”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요건)”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을 “에서 규정한 직급의”로, “자는 동표에 규정된”을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를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에” 를 “제6호의 규정에”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 지방공무원수당” 을 “지방공무원수당” 으로, “규정」” 을 “규정” 으로, “지급대상란” 을 “지급대상”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지방공무원수당” 을 “지방공무원수당” 으로, “규정」 제12조에 따른” 을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16조 중 “에 따라” 를 “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에” 를 “제4호의 규정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 을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제18조제1항 중 “사람이 영 제11조” 를 “사람은 영 제11조의 규정” 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하려는” 을 “신청하고자 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2조에 따른” 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 를 “사람은” 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 따른” 을 “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한다.

제20조 전단 중 “제11조” 를 “제11조의 규정”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에 따른” 을 “의 규정에 따른”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을 “제1항의 규정” 으로, “따라” 를 “의하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에 따라” 을 “의 규정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 따른” 을 “의 규정에 따른” 으로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을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으로 하며, “지방전문경력관” 을 “전문경력관”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를 “국정과제”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 ②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7과 같다.
- ③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8과 같고,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26조 중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본문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3 제1항 중 “에 따라” 를 “의 규정에 따라” 로, “사람에게” 를 “사람에 대하여” 로 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에게” 를 “공무원에 대해서” 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민원창구는” 을 “민원창구에” 로, 같은 조 제2항 중 “에 따른” 을 “의 규정에 따라” 로, “도달되고” 를 “도달하고” 로 하며 “제34조의” 를 “제34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따라” 를 “근거하여” 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3, 별표7의4,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별표 7의2, 별표 16을 삭제한다.

별표 5의4, 별표 17,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3호서식, 별지 4호서식, 별지 11호서식, 별지 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의 2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 - 4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5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나길 21 외 2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5)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4. 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의 이동확인서(3월)

입구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90-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회진로38번나길 21	20210305		20100915	회진로38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308-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회진로96번나길 20	20210305		20100915	회진로96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146-10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진로790번길 91	20210305		20090427	흥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산149-1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진로 447-35	20210311		20090427	고려 흥진왜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439-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68-46	20210311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금릉리 69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강진로438번길 60-169	20210311		20090427	강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문이리 74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생진로775번길 43	20210311		20091023	생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800-1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생진로775번길 97	20210311		20091023	생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5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조음리 1144-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조음로 71-33	20210318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마을 인근이 조원이었음을 의미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동면 지족리 907-2	경상남도 남해군 창동면 삼이로24번길 47-12	20210318		20090427	삼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동면 금릉리 653	경상남도 남해군 창동면 생진로646번길 28-8	20210318		20091023	생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3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209-40	20210319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덕신리 67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장남로 101	20210319		20090427	독립지사 창남 윤병호신생을 기리기 위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천면 도마리 950-4	경상남도 남해군 고천면 남해대로3213번길 18-27	20210319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천면 도마리 950-1	경상남도 남해군 고천면 남해대로3213번길 18-31	20210319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천면 남해대로3213번길 18-17, 109동 2604호	경상남도 남해군 고천면 남해대로3213번길 18-25	20210319	길 확충으로 인한 변경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천면 도마리 950-3	경상남도 남해군 고천면 남해대로3213번길 18-29	20210319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천면 남해대로3213번길 18-19	경상남도 남해군 고천면 남해대로3213번길 18-23	20210319	도로 확충으로 인한 변경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737-6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동로 432-28	20210323		20090427	미조리(미아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서 연결되는 도로임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장포리 1076-10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760	20210329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천면 대곡리 910-1	경상남도 남해군 고천면 화양로 194	20210329		20090427	보리암, 용문사와 함께 남해 3대 사찰인 화양사가 위치하는 길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문이리 1159-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생진로864번길 83	20210329		20091023	생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조음리 150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조음로37번길 50-28	20210329		20090427	조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146-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진로790번길 105	20210329		20090427	흥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21 - 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지형도면고시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노량리 일원에 위치한 구 국도19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170호, 2018.9.11.)되어 같은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6일

남 해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m ²)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폐지)	구국도	19	구국도 19호선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노량리	45,460	설천면 노량리 443-20	설천면 덕신리 1772-13	노량리	2.2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신설국도 준공에 따른 구 국도 군도이관 구간에 지정된 도로구역을 폐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기 개설이 완료된 구간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기 개설이 완료된 구간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5. 관련도면 및 열람장소

- 실음생략 (남해군 건설교통과 비치).

접도구역 폐지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노량리 일원에 위치한 구 국도19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6일

남 해 군 수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19호선 (구도로)	노선명	남해-홍천
접도구역의 변경 구간 및 범위	당초구간	○ 구)국도19호선(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덕신리)			
	폐지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시점 :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443-20번지 - 종점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72-13번지			
접도구역의 변경 사유	○ 신설국도 준공에 따라 신규접도구역이 지정되어, 남해군으로 이관된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폐지함				
비고	○ 국도19호선(구도로) 접도구역 일부구간을 폐지함				

- ※ 접도구역 해제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서 공람 가능함.

군도21호선(노량~덕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노량리 일원에 위치한 구 국도19호선의 군도이관에 따른 「도로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6일

남 해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신설	군도	21	군도 21호선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노량리	44,267	설천면 노량리 443-20	설천면 덕신리 1772-13	노량리	2.2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구 국도19호선 군도이관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기 개설이 완료된 구간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기 개설이 완료된 구간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5. 관련도면 및 열람장소

- 실음생략 (남해군 건설교통과 비치)

남해군 고시 제2021 - 48호

2021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

어장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장정화·정비를 위해 2021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6일

남 해 군 수

1. 근거 : 「어장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군수는 매년 관할어업권에 대해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수립

2. 대상어장 : 481건, 7,478ha
 - 「수산업법」 제8조 및 제41조에 따른 어업면허나 구획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는 수면

3. 계획의 주요내용
 -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관한 사항
 - 강진만해역 9개소, 500ha 실시(바닥갈이, 폐기물 수거처리, 객토 등)
 - 어장환경평가 실시
 - 어류가두리 3개소, 2017년 평가 4등급을 받은 어류 가두리 양식장
 -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 어장청소 대상 : 94건, 814ha, 청소의무 이행
 - 불법행위 지도단속
 - 어장환경 보전 및 개선
 - 어장 환경조사 등 재생사업 강구(강진만)
 - 어업폐기물처리 지원 사업 추진



「어장관리법」 제14조 관련
2021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수립



I . 계획의 의의

□ 목 적

이 계획은 2021년도 어장정화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효율적인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근거 : 「어장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추진 방향

-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효율적 운영
- 어장 여건 및 어장정화정비 등을 감안한 어장 재배치
 - 어장환경평가 실시 후 대상어장에 대해 정비계획수립 추진
-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의무 이행 확행
- 오염원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대상 어장

- 「어장관리법」 제2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8조 및 제41조에 따른 어업면허나 구획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는 수면
- 어장과 어장사이의 수면 등 어장 주변의 공유수면
- 어업권 현황

어업권	어업명칭	건수	면적(ha)	비고
계	-	481	7,478	
마을어업	마을어업	155	5,704	
양식어업	패류양식	286	1,632	
	어류등양식	33	99	
	해조류양식	3	30	
	복합양식	4	13	

II. 세부 시행계획

1 양식어장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 추진방향

- 육상 오염물질 유입이 심화되는 지역의 어촌계, 수협어장을 중심으로 시행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대상어장을 집단, 광역화 실시
- 어장여건과 양식품종에 맞춰 퇴적물 수거 및 경운 실시
- 어장정화정비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어업인, 관련 단체 자문을 통해 조사설계 등 반영

□ 사업대상지 선정

- 양식어장의 장기이용으로 생산성 저하와 병해발생 등 어업피해가 빈발한 어장
- 어장의 밀집과 시설물의 과다 설치로 어장의 생산성 저하 및 관리가 곤란한 어장
- 어장의 관리의무 중 어장청소 퇴적물의 처리가 곤란한 어장

□ 2021년 시행계획

가. 사업 계획

- 사업량 : 500ha(9개소), 500,000천원
- 사업내용 : 바닥경운, 폐기물 수거·처리, 객토 등
 - 바닥경운 300ha, 황토살포 707m³, 폐기물처리 102톤

나. 사업대상 해역

- 대상지 : 9개소
 - (1공구) : 서면(정포, 회룡, 노구, 서상해역), 고현면(차면해역)
 - (2공구) : 남해읍(섬호), 이동면(원천), 남면(유구), 창선면(당저)

다. 사업추진 일정

공종별	일수	사업기간				
		10	20	30	40	50
1. 사업지구 확정 및 표지시설	5	■				
2. 어장바닥경운	30	■	■	■	■	
3. 인양폐기물 및 패각 해상운반	40	■	■	■	■	
4. 황토 및 마사황토운반, 살포, 같이	40	■	■	■	■	
6. 사업 준공	5					■
진도(%)		20.0	20.0	20.0	20.0	20.0
누계(%)		20.0	40.0	60.0	80.0	100.0

다. 어장정화사업 개선 및 사업효과 평가

- 어장정화사업은 어장환경 악화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화사업 후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추진
- 품종별 양식어장 집단지화 통한 어장관리의 효율화를 유도함으로써 어장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양식수산물 생산 유도
- 어장정화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2 어장환경평가 실시

관련근거

- 「어장관리법」 제11조2의 어장환경평가 이행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 평가대상 현황

○ (대상어장)

- 최초면허완료일이 2022. 7. 1 ~ 2023. 6. 30 기간에 해당하는 면허 연장 대상 어류 가두리 양식장
- 2017년 평가 4등급을 받은 어류 가두리 양식장

○ (대상어업 현황)

면허번호	어장위치	최초면허 시작일	최초면허 종료일	기 평가연도(등급)/ 연장 종료일	어업권자
남해양식 제340호	미조면 미조리	2009.06.30	2019.06.29	2017년(4)/ 2023.06.29	전상렬 외 7명
남해양식 제384호	미조면 송정리	2012.10.17	2022.10.16	-	김정규 외 4명
남해양식 제533호	미조면 본촌리	2009.06.30	2019.06.29	2017년(4)/ 2023.06.29	본촌어촌계

□ 어장환경평가 등급별 조치사항

평가등급	조치사항
1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2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 ①어장환경 개선 권고
3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 어장환경 개선 및 ②어장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
4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환경개선 노력정도를 감안하여 4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 다만, 2회 이상 4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어장 바닥의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③어장위치를 조정 하는 방안을 강구(권고)

□ 평가일정

○ (현장조사) : 2021. 4. 5 ~ 4. 9.

○ (결과통보)

- 1차 결과통보 : 2021년 11월 31일 이전(지방자치단체장)
- 재평가 신청 : 어업자가 1차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최종 결과 통보 : 2022년 1월 31일 이전(지방자치단체장)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참조

□ 평가항목 :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저서동물지수

□ 시료채집 및 분석 : 국립수산과학원

3 |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 어장관리 의무 이행 강화

○ (추진방법)

-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의무 이행 관리·감독 강화
- 어업의 면허·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청소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 조치
- 어장관리를 위한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어업인 교육 실시

○ (점검시기) : 분기별 또는 종묘입식 전

○ (2021년 어장청소 대상) : 94건, 814ha(마을 13건, 414ha, 양식 81건, 400ha)

○ (조치계획)

- 어장청소 대상 어업권자 어장관리의무 이행 공문 발송
- 어업인 교육 및 관련단체 모임 시 홍보 활동 실시
- 청소사항을 확인 후 어장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사항을 기록 유지
- 어장관리 의무 위반자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 불법행위 지도단속

○ (단속대상)

- 무면허 양식장 시설을 하거나 법정시설 기준을 초과하여 양식시설물을 설치한 어업권자
- 어장정화정비로 인양된 오·폐물의 관리부실 또는 재 투기 등에 의한 2차 오염여부
- 어장에서 생산된 부산물(어류의 사체, 패각 등) 해상투기 행위
- 무기산 등 유해약품을 사용하는 어업권 등 불법행위자

○ (단속시기) : 수시, 양식물 채취시기

○ (조치계획)

- 어장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어구 및 양식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실예방 및 투기금지 홍보

□ 사전적 어장관리 추진

○ 어장환경은 악화되기 전 그 원인을 최소화하고 오염부하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수단 마련 등 사전적 관리의 중요성 대두

- 어장관리 사전예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등 사전예방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환경친화적 부표 지원을 통해 어장환경 개선

- 어장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와 폐어구 유실·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어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어업인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폐어구 및 시설물을 보관처리시설 확충

4 어장환경 보전 및 개선

□ 어장 환경조사 등 재생사업 강구

○ (대상해역) : 강진만 해역

- 강진만 수면적 : 8,400ha(수출용 패류생산지정 7호해역, 5,290ha 포함)
- 양식어업권 현황

(단위 : ha)

구분	계		새꼬막		피조개		바지락		참굴		기타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남해군	287	1,636	115	633	41	252	50	411	28	172	53	156
강진만	193	1,166	111	614	30	185	30	238	22	120		
비율(%)	67	71	97	97	72	73	60	58	78	70		

○ (현실태)

- 지속적인 어장 이용과 자연·인위적 요인에 의한 어장환경 악화로 수산생물의 성장둔화, 대량폐사의 악순환 반복

※ 최근 5년간 패류의 성장둔화, 폐사량이 증가 추세

○ (추진방향)

- 강진만 양식패류 폐사원인 분석에 필요한 조사자료 확보 강화
- 생물학적 조사항목 모니터링 실시
- 청정어장 재생사업 신청(1개소, 500ha)

○ (추진계획)

- 조사기간 : 2021. 1. ~ 12.(12개월)
-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 어장환경(수온, 염분, 용존산소, 수소이온농도 등) : 매월 3회
 - 먹이생물 : 매월 1회
 - 수질, 저질 : 격월 1회
 - 성장도, 폐사율 : 분기 1회

- 협조기관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 어업폐기물처리 지원 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
-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시스템 구축 및 기반시설 확충
-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강화

○ (사업계획) : 14개 단위사업, 1,670백만원

항목별	단위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폐기물 처리	어업폐기물 처리	500톤	200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해양쓰레기 정화	200톤	140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조업중인양쓰레기	140톤	120	폐어구수매및처리
	도서낙도 쓰레기처리	120회	31.8	쓰레기수거 장비임차
바닥 환경개선	양식어장 정화	500ha	500	해저경운, 쓰레기수거
	낙시터 환경개선	2개소	50	해저 쓰레기수거
폐기물 자원화 및 수거시설	폐부자 감용 및 압축	64톤	62	폐부자 재활용
	쓰레기 선상집하장	1대	50	해상바지선 제작
	바다유입 사전차단시설	3개소	35	강하구 쓰레기차단시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1식	50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지원	1식	30	집하장내 쓰레기 수거
어업인과 함께 해양환경 보전	폐부자 수매사업	20톤	10	폐부자 수거 수매
	지정해역관리	1식	20	경계표시 유지관리 및 해역내 화장실 수거등
	바다환경지킴이	28명	372	해양쓰레기수거

○ (추진계획)

- 기반시설사업은 3~4월중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상반기 사업완료
- 해양쓰레기 수거는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과 어업인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해안변 정화의 날 운영
-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어촌계에서 수거 요청이 있으면 즉시 처리

- 부 칙 -

(시 행 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 등에 의거 어장청소를 한 어장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남해군 고시 제2021 - 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9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화천(지방하천)
2. 성 명 : KT 사천지점장
3.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역사길
4. 점용목적 : 금천교 재가설 공사로 인한 통신시설 이설(관매달기)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066번지(금천교)
6. 점용면적 : 10㎡
7. 점용기간 : 2021. 4. 9. ~ 2026. 4. 8.

남해군 고시 제2021 - 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남 해 군 수

- 1. 하 천 명 : 봉천(지방하천)
- 2. 성 명 : 남해군수(상하수도과장)
- 3.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4. 점용목적 : 소입현 오수압송관로 이설공사에 따른 오수관로 매설
-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645-1번지
- 6. 점용면적 : 12㎡
- 7. 점용기간 : 2021. 4. 14. ~ 영구점용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 - 481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해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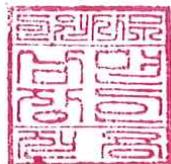
남 해 군 수

- 1. 사용 및 폐기 개시일 : 2021. 4. 5.
- 2. 사유
 - 공인 노후화(마모)로 폐기 한 후 새로 제작하여 재등록
- 3. 등록, 폐기 공인명·인영
 - 가. 폐기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상주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폐기		상주면
남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폐기		남면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고현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폐기		고현면
창선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폐기		창선면
창선면장인	2.1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폐기		창선면

나. 등록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상주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등록		상주면
남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등록		남면
고현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등록		고현면
창선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등록		창선면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창선면장인	2.1cm정사각 형 한글전서체	등록		창선면

끝.

남해군 공고 제2021 - 497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남 해 군 수

1. 2021년 1분기 임대차계약(임대조건) 신고 현황

신고일	임대주택 도로명주소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2021-01-1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동 3층 302호	10,000,000	370,000
2021-02-2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507 서호빌라 205호	10,000,000	550,000
2021-02-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가길 26-6 삼성빌라 301호	5,000,000	450,000
2021-02-26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남해대로675번길 21-4 (상주면 상주리) 1동	15,000,000	-
2021-03-1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동 3층 304호	10,000,000	330,000
2021-03-1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동 2층 204호	10,000,000	320,000
2021-03-1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122번길 37-15 대경빌라 1동 303실	60,000,000	100,000
2021-03-2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38번나길 24 주1동 206실	5,000,000	300,000
2021-03-2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38번나길 24 주1동 301실	50,000,000	-
2021-03-2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38번나길 24 주1동 302실	5,000,000	300,000
2021-03-2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38번나길 24 주1동 305실	50,000,000	-

남해군 공고 제2021 - 520호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1. 6. ~ 2022. 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상주면 양아리 산305-5번지 일원	·사면정비 L=1,330m,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 2021. 4. 14.~2021. 4. 29.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4. 14.~2021. 4. 29.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 (☎055-860-329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대장면적		면적면적	소 유 자		성 명
				(㎡)	(㎡)		주 소		
1	상주면 양아리	792-1	전	1,425	974	부산시 남구 민락동 1600	김하오		
2	상주면 양아리	792	전	474	182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00	박동오		
3	상주면 양아리	792-3	도	258	258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400	김익오		
4	상주면 양아리	산292-1	임	13,190	95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249-4 경원마을한국아파트 314-00	박필오		
5	상주면 양아리	790-3	전	86	86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전수오		
6	상주면 양아리	산294-1	임	10,017	413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전만오		
7	상주면 양아리	786-6	전	1,326	25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00	전영오		
8	상주면 양아리	788	전	307	307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00	김정오		
9	상주면 양아리	788-1	전	671	671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00	정은오		
10	상주면 양아리	786-8	전	337	33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300	정국오		
11	상주면 양아리	산306-3	임	11,603	1,72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정국오		
12	상주면 양아리	산310-3	임	992	4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김익오		
13	상주면 양아리	785	전	797	156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박준오		
14	상주면 양아리	산305-5	임	6,446	1,2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17-00	김정오		
15	상주면 양아리	산312	임	5,950	2,47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00	하혜오		
16	상주면 양아리	산305-1	임	56,231	287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700	박진오		
17	"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00	박순오		
18	"	"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0	박석오		
19-1	"	"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00	박선오		
19-2	상주면 양아리	산314	임	30,446	3,43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88-1 거제유림아시아드아파트 10100	박영오		
19-3	상주면 양아리	산315	임	4,264	671	김해시 봉황동 455-2 광남 백조아파트 1동 00	박경오		
19-4	상주면 양아리	산317-4	임	1,190	262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00	하장오		
20	상주면 양아리	산317-2	임	2,083	91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하덕오		
21	상주면 양아리	산317-1	임	3,868	2,40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하정오		
22	상주면 양아리	산316	임	7,438	2,05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00	박태오		
23	상주면 양아리	산334	임	61,554	4,23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학교법인오		
24	상주면 양아리	산334-1	도	2,086	416	00	남해군		
25	상주면 양아리	산334-3	도	624	596	00	남해군		
26	상주면 양아리	산318-7	도	1,955	62	00	국토교통부		
27	상주면 상주리	산341	임	33,719	23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00	조성오		
28	상주면 상주리	산234-3	도	2,118	90	00	국토교통부		
29	상주면 상주리	산338-14	도	2,050	14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김귀오		
계				263,505	25,008				

남해군 공고 제2021 - 521호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1. 6. ~ 2022. 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상주면 상주리 산325번지 일원	·사면정비 L=1,650m,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 2021. 4. 14.~2021. 4. 29.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4. 14.~2021. 4. 29.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방재복구팀 (☎055-860-32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1)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군	면	리	본	지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남해	상주	상주	산338	5	임	3,701	1,94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김귀오	
2	"	"	"	산338	19	도	363	363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김귀오	
3	"	"	"	산338	4	임	6,338	2,191	(사정)	장세오	
4	"	"	"	산338	18	도	285	285	남해군		
5	"	"	"	산338	1	임	2,463	529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서길 00	정경오	
6	"	"	"	산338	16	도	78	78	남해군		
7	"	"	"	산337	3	도	141	141	남해군		
8	"	"	"	산337		임	12,540	1,53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정신오	
9	"	"	"	산325		임	20,943	2,2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810-1현대아파트 106-00	오승오	
10	"	"	"	산325	3	도	230	230	남해군		
11	"	"	"	산325	1	도	2,095	240	남해군		
12	"	"	"	산326	9	도	833	833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4400	박진오	
13	"	"	"	산326	1	임	6,918	25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최준오	
14	"	"	"	산326	11	도	33	33	남해군		
15	"	"	"	산327	2	임	8,090	1,11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김장오	
16	"	"	"	산327	7	도	114	114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김장오	
17	"	"	"	산327	1	임	5,152	68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최동오	
18	"	"	"	산328	1	임	21,287	435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00	김계오	1/2

편 입 용 지 조 서(2)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군	면	리	본	지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9	남해	상주	상주			임	957	957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300	최귀오	1/2
20	"	"	"	산328	9	임	10,727	224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박수오	
21	"	"	"	산328	3	임	730	73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00	김계오	1/2
22	"	"	"	산317	8	도	730	73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300	최귀오	1/2
23	"	"	"	산317	3	도	508	50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박수오	
24	"	"	"	산317	4	도	510	5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0000	최상오	
25	"	"	"	산317	1	임	20,271	1,01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인양로 00	오태오	
26	"	"	"	산312	2	임	18,758	1,703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최성오	
27	"	"	"	산312	11	도	277	27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정동 00	김오	
28	"	"	"	산312	1	임	8,676	3,037	남해군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00	김정오	1/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정준오	1/5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00	김경오	1/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00	김성오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00	김상오	1/5
29	"	"	"	산312	10	도	690	690	남해군		
30	"	"	"	산307		임	4,568	767	부산광역시 남구 명미동 400	김상오	1/2

편 입 용 지 조 서(3)

입원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군	면	리	본	지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남해	상주	상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00	송일O	1/2
31	"	"	"	산307	4	도	791	791		부산광역시 남구 광미동 400	김상O	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00	송일O	1/2
32	"	"	"	산307	6	도	276	276		부산광역시 남구 광미동 400	김상O	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00	송일O	1/2
33	"	"	"	산305		임	18,182	849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00	전성O	
34	"	"	"	산305	2	도	397	397		남해군		
35	"	"	"	산305	1	임	98	9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900	이봉O	
36	"	"	"	산305	4	도	268	268		남해군		
37	"	"	"	산304	1	임	9,907	780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00	석기O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00	김기O	1/2
38	"	"	"	산304	6	도	317	317		남해군		
39	"	"	"	1998	3	답	203	203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1100	서종O	
40	"	"	"	1998	7	도	197	19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00	권평O	
41	"	"	"	1998	4	답	909	411		경상남도 진주시 상동동 10500	민을O	
42	"	"	"	산302	13	임	21,571	59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00	권정O	
	합 계								29,633			

남해군 공고 제2021 - 523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2. 개정이유

-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사용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나.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경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다.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라. 사용료 미납에 따른 연체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마. 미납 및 과오납된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구체적으로 표현
- 바. 그 밖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주요내용

- 가. 사용료 부과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안 제2조)
- 나.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사용자에게 대하여 사용료 부과·징수(안 제10조)
- 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안 제21조 제1항·3항)
- 라.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 마련(안 제22조)
- 바. 사용료 미납에 따른 연체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 도입(안 제23조)

사. 미납 및 과오납된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구체적으로 표현(안 제26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수(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우52413)
- 전 화 : 055-860-3333, 팩스 : 055-860-375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하수도팀(전화 055-860-33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16. 11. 15., 2019. 4. 4.>

제3조 삭제 <2016. 11. 15.>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16. 11. 15.>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6. 11. 1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

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따로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4.>

제11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지하수 이용량 외의 하수 배출량은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출수 신고량 <개정 2019. 4. 4.>

3. 삭제 <2019. 4. 4.>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0. 2.>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4. 4.>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4.>

1. 오수발생량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4의 예에 따른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10m³/일을 초과하는 양

-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 4.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해군의 공보 또는 전 읍·면의 게시판 등에 매년 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서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m³/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 나. 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 ② 제17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하여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이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남해군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 ③ 남해군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6. 11. 15.>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10. 4.>

1. 하수발생량 산정

-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남해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남해군 공보 또는 전 읍·면 게시판 등에 매년 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 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는 제1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시기로 하며,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에도 같은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11. 15., 2019. 10. 4.>

제17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원인자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 5의2를 참조하여 사용한다.[본조신설 2019. 10. 4.]

제18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분뇨 수집·운반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의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 3. 분뇨의 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

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대행자 등이 제출한 반입서에 근거하여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납부한 처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1호나목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할 때 하수도 요금 감면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 2019. 4. 4., 2020. 6. 23.>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경감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로 하며, 나목의 경감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사용요금의 50%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용요금의 50%
-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를 공급받아 재이용하는 자
-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4. 삭제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게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인 경우
-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지역인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4.> <중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 10. 2., 2016. 11. 15.> <중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23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삭제 <2019. 4. 4.>
3. 제4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6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6.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8.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0. 제15조부터 제17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제25조(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26조(소멸시효)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사용료 등 : 3년
2. 과오납된 사용료 등 : 5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525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남 해 군 수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출입구간 : 상주면 양아리 산305-5번지 일원

2. 출입기간 : 2021. 5. ~ 사업 종료 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055-860-32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	(㎡)		주소		
1	상주면 양아리	792-1	전	1,425	974		부산시 남구 민락동 1600	김하오	
2	상주면 양아리	792	전	474	182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00	박동오	
3	상주면 양아리	792-3	도	258	258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400	김익오	
4	상주면 양아리	산292-1	임	13,190	95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249-4 경원마을한국아파트 314-00	박필오	
5	상주면 양아리	790-3	전	86	86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전수오	
6	상주면 양아리	산294-1	임	10,017	413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전만오	
7	상주면 양아리	786-6	전	1,326	25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00	전영오	
8	상주면 양아리	788	전	307	307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00	김정오	
9	상주면 양아리	788-1	전	671	671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00	정은오	
10	상주면 양아리	786-8	전	337	33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300	정국오	
11	상주면 양아리	산306-3	임	11,603	1,72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정국오	
12	상주면 양아리	산310-3	임	992	4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김익오	
13	상주면 양아리	785	전	797	156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박준오	
14	상주면 양아리	산305-5	임	6,446	1,2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17-00	김정오	
15	상주면 양아리	산312	임	5,950	2,47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00	하혜오	
16	상주면 양아리	산305-1	임	56,231	287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700	박진오	
17	"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00	박순오	
18	"	"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0	박석오	
19-1	"	"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00	박선오	
19-2	상주면 양아리	산314	임	30,446	3,43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88-1 거제유림아시아드아파트 10100	박영오	
19-3	상주면 양아리	산315	임	4,264	671		김해시 봉황동 455-2 광남 백조아파트 1동 00	박경오	
19-4	상주면 양아리	산317-4	임	1,190	262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00	하장오	
20	상주면 양아리	산317-2	임	2,083	91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하덕오	
21	상주면 양아리	산317-1	임	3,868	2,40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하정오	
22	상주면 양아리	산316	임	7,438	2,05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00	박태오	
23	상주면 양아리	산334	임	61,554	4,23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학교법인인	
24	상주면 양아리	산334-1	도	2,086	416		00	남해군	
25	상주면 양아리	산334-3	도	624	596		00	남해군	
26	상주면 양아리	산318-7	도	1,955	62		00	국토교통부	
27	상주면 상주리	산341	임	33,719	23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00	조성오	
28	상주면 상주리	산234-3	도	2,118	90		00	국토교통부	
29	상주면 상주리	산338-14	도	2,050	14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김귀오	
계				263,505	25,008				

남해군 공고 제2021 - 526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남 해 군 수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출입구간 : 상주면 상주리 산325번지 일원

2. 출입기간 : 2021. 5. ~ 사업 종료 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055-860-32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1)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군	면	리	본	지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남해	상주	상주	산338	5	임	3,701	1,94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김귀오	
2	"	"	"	산338	19	도	363	363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김귀오	
3	"	"	"	산338	4	임	6,338	2,191	(사정)	장세오	
4	"	"	"	산338	18	도	285	285	남해군		
5	"	"	"	산338	1	임	2,463	529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서길 00	정경오	
6	"	"	"	산338	16	도	78	78	남해군		
7	"	"	"	산337	3	도	141	141	남해군		
8	"	"	"	산337		임	12,540	1,53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정신오	
9	"	"	"	산325		임	20,943	2,2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810-1현대아파트 106-00	오승오	
10	"	"	"	산325	3	도	230	230	남해군		
11	"	"	"	산325	1	도	2,095	240	남해군		
12	"	"	"	산326	9	도	833	833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4400	박진오	
13	"	"	"	산326	1	임	6,918	25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최준오	
14	"	"	"	산326	11	도	33	33	남해군		
15	"	"	"	산327	2	임	8,090	1,11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김장오	
16	"	"	"	산327	7	도	114	114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김장오	
17	"	"	"	산327	1	임	5,152	68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최동오	
18	"	"	"	산328	1	임	21,287	435	부산광역시 금정구 감감로 00	김계오	1/2

편 입 용 지 조 서(2)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군	면	리	본	지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남해	상주	상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300	최귀오	1/2
19	"	"	"	산328	9	임	957	95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박수오	
20	"	"	"	산328	3	임	10,727	22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00	김계오	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300	최귀오	1/2
21	"	"	"	산328	8	도	730	73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박수오	
22	"	"	"	산317		임	10,048	778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0000	최상오	
23	"	"	"	산317	3	도	508	5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00	오태오	
24	"	"	"	산317	4	도	510	51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최성오	
25	"	"	"	산317	1	임	20,271	1,01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최성오	
26	"	"	"	산312	2	임	18,758	1,70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정동 00	김오	
27	"	"	"	산312	11	도	277	277		남해군		
28	"	"	"	산312	1	임	8,676	3,037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00	김정오	1/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정준오	1/5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00	김경오	1/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00	김성오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00	김상오	1/5
29	"	"	"	산312	10	도	690	690		남해군		
30	"	"	"	산307		임	4,568	767		부산광역시 남구 맏미동 400	김상오	1/2

편 입 용 지 조 서(3)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군	면	리	본	지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남해	상주	상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00	송일O	1/2
31	"	"	"	산307	4	도	791	791		부산광역시 남구 망미동 400	김상O	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00	송일O	1/2
32	"	"	"	산307	6	도	276	276		부산광역시 남구 망미동 400	김상O	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00	송일O	1/2
33	"	"	"	산305		임	18,182	849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00	전성O	
34	"	"	"	산305	2	도	397	397		남해군		
35	"	"	"	산305	1	임	98	9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900	이봉O	
36	"	"	"	산305	4	도	268	268		남해군		
37	"	"	"	산304	1	임	9,907	780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00	석기O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00	김기O	1/2
38	"	"	"	산304	6	도	317	317		남해군		
39	"	"	"	1998	3	답	203	203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1100	서종O	
40	"	"	"	1998	7	도	197	19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00	권평O	
41	"	"	"	1998	4	답	909	411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10500	민을O	
42	"	"	"	산302	13	임	21,571	59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00	권정O	
	합 계								29,633			

남해군 공고 제2021 - 544호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2. 개정이유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악화로 착한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및 주민세 감면연장 필요
- 징수유예 등을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가산금 감면으로 서민생활 지원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조항 개정(안 제10조의2)

- 1) 감면요건 : 과세기준일 규정을 삭제하여 요건 완화
- 2) (현행)감면을 최대50%, 2020.12.31. → (개정)감면을 최대75%, 2021.12.31.

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에 주민세의 감면기간 연장(안 제10조의3)

- 1) (현행) 2020년 8월분 → (개정) 2021년 8월분

다.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안 제10조의4)

- 1) 대 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 감면대상 : 2021.12.31.까지 (중)가산금(2020.1.1.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
- 3) 신청제외 :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5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72,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부과팀(전화 055-86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 라 한다)” 를 “가족관계등록부” 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 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00분” 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2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조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2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을 “2021년” 으로,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021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 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50
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5이하	100분의 55
100분의 55초과 100분의 60이하	100분의 60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65이하	100분의 65
100분의 65초과 100분의 70이하	100분의 70
100분의 70초과	100분의 75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7월 1일” 을 “2021년 7월 1일” 로, “균등분 주민세” 를 “사업소분 주민세(「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의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2.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나목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나목 4) 그 밖의 법인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균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균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증가산금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7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의4 신설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p> <p>1. 법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50</p> <p>2. 삭 제</p> <p>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 ~ 3. (생략)</p>	<p><삭 제></p> <p>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 -----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 ----- 2022년 12월 31일까지 100분-----.</p> <p>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 2022년 12월 31일-----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u>2020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 ----- ----- ----- <u>2022년 12월 31일</u> ----- ----- ----- ----- -----.</p>
<p>제10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p>	<p>제10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 ----- ----- ----- ----- ----- ----- <u>2021년</u> ----- ----- <u>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021년</u> ----- ----- ----- ----- -----.</p>
<p>1. <u>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u></p> <p>2. <u>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u></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임대료 인하율</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율</th> </tr> </thead> <tbody> <tr><td>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td><td>100분의 10</td></tr> <tr><td>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td><td>100분의 15</td></tr> <tr><td>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td><td>100분의 20</td></tr> <tr><td>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td><td>100분의 25</td></tr> <tr><td>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td><td>100분의 30</td></tr> <tr><td>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td><td>100분의 35</td></tr> <tr><td>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td><td>100분의 40</td></tr> <tr><td>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td><td>100분의 45</td></tr> <tr><td>100분의 45초과</td><td>100분의 50</td></tr> </tbody> </table> <p>③ ~ ⑤ (생략)</p> <p>제10조의3(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u>균등분 주민세</u>에 한정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2호 중 제78조제1항제2호의 그 밖의 법인 2.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3호의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p><신설></p>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p>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임대료 인하율</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율</th> </tr> </thead> <tbody> <tr><td>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td><td>100분의 10</td></tr> <tr><td>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td><td>100분의 15</td></tr> <tr><td>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td><td>100분의 20</td></tr> <tr><td>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td><td>100분의 25</td></tr> <tr><td>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td><td>100분의 30</td></tr> <tr><td>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td><td>100분의 35</td></tr> <tr><td>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td><td>100분의 40</td></tr> <tr><td>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td><td>100분의 45</td></tr> <tr><td>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이하</td><td>100분의 50</td></tr> <tr><td>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5이하</td><td>100분의 55</td></tr> <tr><td>100분의 55초과 100분의 60이하</td><td>100분의 60</td></tr> <tr><td>100분의 60초과 100분의 65이하</td><td>100분의 65</td></tr> <tr><td>100분의 65초과 100분의 70이하</td><td>100분의 70</td></tr> <tr><td>100분의 70초과</td><td>100분의 75</td></tr> </tbody> </table>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3(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 ----- 2021년 7월 1일----- -- <u>사업소분 주민세(「지방세법」 제8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의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2.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나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나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그 밖의 법인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50	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5이하	100분의 55	100분의 55초과 100분의 60이하	100분의 60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65이하	100분의 65	100분의 65초과 100분의 70이하	100분의 70	100분의 70초과	100분의 75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50																																																		
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5이하	100분의 55																																																		
100분의 55초과 100분의 60이하	100분의 60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65이하	100분의 65																																																		
100분의 65초과 100분의 70이하	100분의 70																																																		
100분의 70초과	100분의 75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0조의4(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균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균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p> <p>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증가산금</p> <p>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2조(감면 제외대상) ----- ----- 법 제177조----- -----.</p>

남해군 공고 제2021 - 545호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세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용어 변경(안 제3장 제1절 ~ 제2절)

- 1) “균등분” 주민세 → “개인분” 주민세
- 2) “재산분” 주민세 → “사업소분” 주민세

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안 제6조)

다. “사업소분”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5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72,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부과팀(전화 055-86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 을 “개인분” 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같은 항 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을 “건축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u>균등분</u></p> <p>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u>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개인</u> 가. <u>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만원</u> 나. <u>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u></p> <p>2. <u>법인</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u>개인분</u></p> <p>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u>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u>재산분</u></p> <p>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u>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u></p> <p>② <u>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u></p> <p>제8조(신고의무) ① <u>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②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u>사업소분</u></p> <p>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u>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같은 항 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u></p> <p><삭 제></p> <p>제8조(신고의무) ① <u>사업소분</u>----- -----건축 물----- ----- ----- -----.</p> <p>②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21 - 547호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74조~제83조 개정으로 관련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맞게 제명을 개정함(안 제명)

(현행)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 (개정)남해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용어 변경(안 제3장 제1절~제2절)

1) “균등분” 주민세 → “개인분” 주민세

2) “재산분” 주민세 → “사업소분” 주민세

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3장 제2절, 제3절, 제4장)

1) “법 제50조” → “법 제49조”

2) “법 제51조” → “법 제50조”

라. 주민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 개정

1) [별지 제3호 서식] 주민세(개인분) 부과세 처리부

2)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3)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5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72,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부과팀(전화 055-86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을 “남해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남해군세조례」” 를 “「남해군 군세 조례」” 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 을 “개인분” 으로 한다.

제4조 중 “균등분” 을 “개인분” 으로,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 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균등분)” 을 “(개인분)” 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로, “같은 법 제51조” 를 “같은 법 제50조” 로 한다.

제8조 중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재산분” 을 각각 “사업소분” 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로, “같은 법 제51조” 를 “같은 법 제50조” 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로,
“같은 법 제51조” 를 “같은 법 제50조” 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중 “(균등분)” 을 “(개인분)” 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제목 중 “(재산분)” 을 각각 “(사업소분)”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세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p> <p>제4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 <u>균등분</u>(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을 과세하기 전에 <u>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u>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p> <p>제5조(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p> <p>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u>균등분</u>)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u>재산분</u></p> <p>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u>재산분</u>(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u>재산분</u>)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남해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남해군 군세 조례」----- ----- ----- -----.</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p> <p>제4조(과세대장 정리) ----- ----- <u>개인분</u>-----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6조(비과세 관리) ----- ----- -----(<u>개인분</u>)----- ----- -----.</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u>사업소분</u></p> <p>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 ----- <u>사업소분</u>----- ----- -----(<u>사업소분</u>)-----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 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 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p> <p>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신고 및 납부처리) ①·② (생략)</p> <p>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 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② (생략)</p>	<p>③ ----- -----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 49조----- 같은 법 제50 조----- ----- -----.</p> <p>제8조(보통징수) ----- ----- ----- (사업소분) ----- ----- -----.</p> <p>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 ----- ----- 사업소분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 ----- 사업소분 ----- -----.</p> <p>제9조의2(신고 및 납부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같은 법 제 50조----- ----- -----.</p> <p>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의 경우 연세액 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1. 1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p> <p>2. 2월부터 3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p> <p>3. 4월부터 6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p> <p>4. 7월부터 9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p> <p>5.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공제하지 않는다.</p>	<p>③ -----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 ----- -----.</p> <p>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 별지 제6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과세 번호	사업 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 율	산출 세액	가산세	계	결의 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남해군 공고 제2021 - 559호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농어촌 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해 우리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3조)

나. 남해군수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책무, 안전관리 (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사업과 그 범위(안 제6조)

라. 지도·감독, 다른 조례의 준용 (안 제7조 ~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1년 5월 4일까지 (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30,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소득개발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36, 팩스 055-860-3982
- 3) 메 일 : omoto@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소득개발팀, 전화 055-860-86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라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농어촌민박사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들로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 등)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
4.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561호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제59조, 제6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복지향상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제6조)
- 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제15조)
- 라.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안 제19조)
- 마.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안 제20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2 종합사회복지관 주민복지과(우52419)
- 전화 : 055-860-3842, 팩스 055-860-3882
- 메일 : j0629@korea.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55-860-3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남해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기 위한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해군민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의 실현을 위한 군수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군수는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의 자격) ① 제1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의 보조나 간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장애인복지시설 지원) ①군수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2.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익신장 사업
4. 장애인 재활훈련 및 자활지원 사업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6.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려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의 책임으로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위탁시설” 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임의로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위탁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시설 기능 보강. 다만, 위탁시설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3.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비용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사회참여 및 체육·문화·여가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 인식개선 또는 역량강화사업
4.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20조(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일상·사회·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 3.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제공
- 4.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 5.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
- 6. 장애 여성의 자립생활지원 및 출산·육아 지원서비스
- 7.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제21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① 장애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은 군수에게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우선지원 대상)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① 군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장애인 관련 시설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남해군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57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KT사천지점장	주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소하천명		북변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8-2번지		
	면적	12㎡ (임시점용 49㎡)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 4. 16. ~ 2026. 4. 8.		
	목적 및 사유	교량 재가설 공사로 인한 통신시설 이설(관매달기)		